

의안번호	제 1058 호
의 결 연 월 일	2022년 6월 일 (제 400 회)

충청북도교육청 기초학력 보장을 위한 교육환경 지원 조례안

발 의 자	최경천 의원 등 6인
발의연월일	2022년 6월 3일

충청북도교육청 기초학력 보장을 위한 교육환경 지원 조례안

(최경천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058
----------	------

발의연월일 : 2022년 6월 3일

발 의 자 : 최경천, 김국기, 김영주,

박성원, 이수완, 임동현

1. 제안 이유

충청북도 내 학생의 기초학력 보장을 위한 교육환경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학생 개개인의 잠재력 계발과 자아실현 역량 증진을 위해 공교육의 책무를 강화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정의(안 제2조)

나. 교육감 등의 책무(안 제3조)

다. 시행계획 수립(안 제4조)

라.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안 제5조~안 제8조)

마. 실태조사(안 제9조)

바. 기초학력진단검사(안 제10조)

사. 학습지원대상학생의 선정 및 지원(안 제11조)

아. 학부모 교육 등(안 제12조)

자. 학습지원 담당교원 지정 및 연수(안 제13조)

차. 기초학력지원센터 설치(안 제14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붙임

나. 비용추계: 비용추계서 붙임

다. 관계부서 협의: 충청북도교육청 학교혁신과

충청북도교육청 기초학력 보장을 위한 교육환경 지원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기초학력 보장법」에 따라 충청북도 내 학습지원 대상학생의 기초학력 보장을 위한 교육환경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 ① “기초학력”, “학습지원대상학생”, “학습지원교육”의 뜻은 「기초학력 보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의 규정을 따른다.
- ② “교육환경”이란 학습지원교육을 위한 인적, 물적 환경을 말한다.

제3조(교육감 등의 책무) ① 충청북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학생의 기초학력 보장을 위한 교육환경 지원에 관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기초학력 보장을 위하여 가능한 20명 이하 수준의 학급당 학생 수 유지 및 학교 현장과의 소통 강화 등 학교 교육환경 개선 및 지원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③ 학교의 장(이하 “학교장”이라 한다)은 교육에 관한 각종 시책을 시행함에 있어서 기초학력 보장을 위한 교육환경 지원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시행계획의 수립) ① 교육감은 매년 ‘기초학력 보장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기초학력 보장 추진목표 및 기본방향
2. 기초학력 보장 추진 방법 및 성취기준에 관한 사항
3. 기초학력 향상 학습프로그램 개발·보급 등 기초학력 보장을 위한 교육 환경 지원에 관한 사항
4. 기초학력 보장을 위한 행·재정적 지원에 관한 사항
5. 기초학력진단검사 실시에 관한 사항
6. 기초학력 및 교육환경 지원 관련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7. 기초학력 보장 역량강화를 위한 교원연수에 관한 사항
8. 학부모 교육·상담 및 정보제공에 관한 사항
9. 유관기관과의 협력 방안에 관한 사항
10.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기초학력 보장위원회의 설치 등) 교육감은 충청북도교육청 기초학력 보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으며,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한다.

1. 제4조의 시행계획 수립 및 추진 실적에 관한 사항
2. 그 밖에 교육감이 기초학력 보장과 관련하여 자문을 요청하는 사항

제6조(위원회의 구성 및 임기)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내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교육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 호선한다.

② 당연직 위원은 소관업무 담당부서의 장을 포함한 도교육청 소속 공무원으로 구성하고, 위촉직 위원은 충청교원단체가 추천하는 2명을 포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교육감이 위촉한다.

1. 기초학력관련 분야의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충청북도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3. 그 밖에 기초학력 보장과 관련하여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③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④ 위원회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소관업무 담당자가 된다.

⑤ 그 밖에 위원회 구성에 필요한 사항은 「충청북도교육청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제7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③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위원회 회의는 위원장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에 소집한다.

⑤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위원회는 안전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 공무원 및 이해관계인 등을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필요한 관련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제8조(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위촉위원에게 「충청북도 교육·학예에 관한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서 정한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9조(실태조사) 교육감은 학생들의 기초학력 보장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기초학력 및 학교현장의 교육환경에 대한 실태조사를 연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제10조(기초학력진단검사) ① 학교장은 학습지원대상학생에 대한 지원을 위해 매년 필요한 진단검사를 실시할 수 있고, 그 결과를 학생의 보호자에게 통지할 수 있다.

② 교육감은 학습지원대상학생을 위한 진단검사의 도구를 다양하게 개발하여 학교 현장에 보급하며, 교사는 진단검사 도구를 자율적으로 활용한다.

③ 진단검사는 교사의 판단에 의해 일부 학생을 대상으로, 또는 학급 단위로 시행할 수 있으며, 학년·학교·지역·도 단위의 평가 방식은 지양한다.

④ 진단검사는 지식 위주의 검사방법을 지양하고 지필평가, 관찰, 면담 등을 활용하여 학습 능력에 영향을 주는 다양한 요인들을 파악할 수 있는 방법으로 실시한다.

제11조(학습지원대상학생의 선정 및 지원) ① 학교장은 “법” 제8조에 따라 학습지원대상학생을 선정하여 학습지원교육을 실시하고, 필요한 경우 외부

전문기관과 연계한 학습지원교육을 실시하거나 자문을 구할 수 있다.

② 학교장은 학습지원대상학생의 효율적 지원을 위해 개인별 학생 맞춤형 학습 지원교육 및 상담을 실시할 수 있고, 특별한 학습지원이 필요한 교과목의 수업에 보조인력을 배치할 수 있다.

제12조(학부모 교육 등) ① 학교장은 학습지원대상학생의 보호자를 대상으로 기초학력 보장을 위한 학습 및 교육환경 지원에 관한 정보제공, 교육 및 상담을 실시할 수 있다.

② 학교장은 필요한 경우 제1항에 따른 사무의 일부를 기초학력 보장 관련 전문 기관에 위탁 또는 연계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13조(학습지원 담당교원 지정 및 연수) ① 학교장은 학습지원 담당교원을 지정 할 수 있다.

② 교육감은 학습지원 담당교원의 역량 강화를 위한 연수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14조(기초학력지원센터) ① 교육감은 법 제10조에 따라 충청북도교육청 기초학력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지정 또는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센터는 기초학력 보장법 시행령 제10조제2항과 그 밖에 기초학력 보장을 위한 교육환경 지원 업무를 수행한다.

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계법령

□ 기초학력 보장법

[시행 2022. 3. 15.] [법률 제18458호, 2021. 9. 24., 제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기초학력”이란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이하 “학교”라 한다)의 학생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학교 교육과정을 통하여 갖추어야 하는 최소한의 성취기준을 충족하는 학력을 말한다.
2. “학습지원대상학생”이란 학교의 장이 기초학력을 갖추지 못하였다고 판단하여 제8조제1항에 따라 선정한 학생을 말한다. 다만,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15조에 따라 학습장애를 지닌 특수교육대상자로 선정된 학생은 제외한다.
3. “학습지원교육”이란 학습지원대상학생에게 개인의 상황과 특성에 맞는 내용과 방법으로 실시하는 맞춤형 교육을 말한다.

제3조(국가 등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기초학력 보장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기초학력 보장을 위하여 학교의 학급당 학생수를 적정한 수준으로 유지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기초학력 보장에 관한 시책의 추진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학교의 장은 교육에 관한 각종 시책을 시행함에 있어서 기초학력 보장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기초학력 보장 종합계획의 수립 등) ① 교육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의 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과 협의한 후 제6조에 따른 기초학력 보장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5년마다 기초학력 보장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

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종합계획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교육감은 종합계획의 내용과 해당 지역의 여건을 고려하여 매년 시·도 기초학력 보장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③ 교육감은 전년도 시행계획에 따른 추진실적과 다음 연도 시행계획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그 밖에 종합계획과 시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조(기초학력진단검사) ① 학교의 장은 학습지원대상학생을 조기에 발견하고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학생별 기초학력 수준 도달 여부를 진단하는 검사(이하 “기초학력진단검사”라 한다)를 실시할 수 있고, 그 결과를 학생의 보호자에게 통지할 수 있다.

② 그 밖에 기초학력진단검사의 내용 및 실시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조(학습지원대상학생의 선정 및 학습지원교육) ① 학교의 장은 기초학력진단검사 결과와 학급담임교사 및 해당 교과교사의 추천, 학부모 등 보호자에 대한 상담결과 등에 따라 학습지원교육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학생을 학습지원대상학생으로 선정할 수 있다.

② 학교의 장은 학습지원대상학생의 학력 수준과 기초학력 미달 원인 등을 고려하여 학습지원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③ 학교의 장은 필요한 경우 보호자에 대한 교육·상담을 실시하거나 학교 외부의 전문기관과 연계하여 학습지원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④ 학교의 장은 학습지원교육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제9조에 따른 학습지원 담당교원, 「학교보건법」 제15조에 따른 보건교사, 「초·중등교육법」 제19조의2에 따른 전문상담교사 등이 함께 학습지원교육을 실시하도록 할 수 있다.

⑤ 학교의 장은 학생들의 기초학력 보장을 위하여 특별한 학습지원이 필요한 교과목의 수업에 보조인력을 배치할 수 있다.

⑥ 그 밖에 학습지원대상학생 선정, 학습지원교육 및 보조인력 배치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9조(학습지원 담당교원) ① 학교의 장은 효율적인 학습지원교육의 수행을 위하여 「초·중등교육법」 제19조에 따른 교원 중에서 학습지원교육을 담당하는 교원(이하 “학습지원 담당교원”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
 ② 교육부장관 및 교육감은 학습지원 담당교원에게 전문성 함양을 위한 연수를 제공하여야 한다.
 ③ 그 밖에 학습지원 담당교원의 지정, 연수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0조(기초학력지원센터) ① 교육부장관 및 교육감은 기초학력 보장 제도 개선·연구, 학습지원대상학생 실태조사·지원 및 기초학력 보장 관련 사업의 성과 관리 등을 위하여 기초학력지원센터를 지정·운영할 수 있다.
 ② 교육부장관 및 교육감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기초학력지원센터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제4항에 따른 지정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 ③ 교육부장관 및 교육감은 제2항에 따라 기초학력지원센터의 지정을 취소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④ 그 밖에 기초학력지원센터의 지정 및 지정 취소의 기준·절차,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기초학력 보장법 시행령

[시행 2022. 3. 25.] [대통령령 제32554호, 2022. 3. 25., 제정]

제2조(최소한의 성취기준 등) ① 「기초학력 보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최소한의 성취기준”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43조제1항에 따른 국어, 수학 등 교과목의 내용을 이해하고 활용하는 데 필요한 읽기·쓰기·셈하기를 포함하는 기초적인 지식, 기능 등으로 한다.
 ② 교육부장관은 제1항의 최소한의 성취기준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을 정하고, 이를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기초학력 보장 종합계획에 포함해야 한다.
 ③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의 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제2항에 따라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범위에서 지역 실정에 맞는 최소한의 성취기준의 세부 내용을 정할 수 있다.

제3조(기초학력 보장 종합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 등) ① 교육부장관은 법 제5조제1항 전단에 따라 기초학력 보장 종합계획(이하 “기초학력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할 때에는 기초학력종합계획을 시행하는 해의 전년도 9월 30일까지 수립해야 한다.

② 법 제5조제1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기초학력 보장의 목표 및 기본 방향
2. 기초학력 보장의 추진 방법
3. 기초학력 보장을 위한 자원 조달 등 기반 구축에 관한 사항
4. 기초학력 보장을 위한 제도·법령 개선에 관한 사항
5. 제2조에 따른 최소한의 성취기준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
6. 법 제7조에 따른 기초학력진단검사의 실시 및 지원에 관한 사항
7. 법 제9조에 따른 학습지원 담당교원의 지정 및 연수에 관한 사항

③ 교육부장관은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기초학력종합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교육감에게 지체 없이 그 사실을 통보해야 한다.

④ 교육감은 법 제5조제3항에 따라 전년도 시·도 기초학력 보장 시행계획(이하 “기초학력시행계획”이라 한다)에 따른 추진실적과 다음 연도 기초학력시행계획을 다음 연도의 학년도가 시작되기 2개월 전까지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⑤ 교육감은 제4항에 따라 제출한 기초학력시행계획을 변경한 경우에는 변경된 기초학력시행계획을 지체 없이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⑥ 교육감은 기초학력시행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이하 “학교”라 한다)의 장에게 지체 없이 그 사실을 통보해야 한다.

제6조(기초학력진단검사의 실시 방법 등) ①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기초학력진단검사(이하 “기초학력진단검사”라 한다)는 지필평가, 관찰, 면담 등의 방법으로 실시한다.

② 학교의 장은 기초학력진단검사를 실시할 때에는 미리 학생과 학생의 보호자에게 검사 과목·방법 및 일정 등을 알려야 한다.

③ 교육부장관 및 교육감은 기초학력진단검사의 효율적인 운영을 지원하기 위하여 컴퓨터 등 전자통신매체를 통하여 기초학력진단검사의 평가문항 및 그 결과 등을 제공하는 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기초학력진단검사 실시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교육감이 정한다.

제7조(학습지원대상학생의 선정 등) ①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학습지원대상학생(이하 “학습지원대상학생”이라 한다)의 선정은 매 학년도의 시작일부터 2개월 이내에 완료해야 한다. 다만, 입학·편입학·전학 등의 사유로 새로 학생에게 학습지원교육이 필요하다고 학교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2개월이 지난 후에도 학습지원대상학생을 추가로 선정할 수 있다.

② 학교의 장은 학습지원대상학생의 선정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교육감이 정하여 고시하는 구성 및 운영 기준에 따라 학습지원대상학생 지원협의회를 설치할 수 있다.

③ 학교의 장은 법 제8조제3항에 따라 학습지원대상학생의 학부모 등 보호자에 대한 교육이나 상담을 실시할 때에는 미리 학생의 학부모 등 보호자에게 그 교육 또는 상담에 성실히 협조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④ 학교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선정된 학습지원대상학생 중에서 학교에서 제공하기 어려운 학습 지도 및 심리 상담 등 학습지원교육에 대한 추가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학생에 대하여 교육감에게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⑤ 학교의 장은 법 제8조제5항에 따라 특별한 학습지원이 필요한 교과목의 수업에 보조인력을 배치할 때에는 소속 교원의 현황, 업무 조정 범위 등을 고려하여 보조인력 수급에 관한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⑥ 학교의 장은 제5항에 따라 수립한 보조인력 수급에 관한 계획을 시행할 때 보조인력에 대한 적절한 대우와 근무환경 조성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교육감에게 보조인력의 운영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제8조(학습지원 담당교원의 업무 등) ①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학습지원 담당교원(이하 “학습지원담당교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학습지원교육 운영계획의 수립 및 관리
2. 학습지원대상학생에 대한 교육 및 상담

3. 그 밖에 학습지원교육의 수행에 필요한 업무

② 학교의 장은 학습지원담당교원의 원활한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학습지원담당교원의 수업시간 수, 업무 분장 등 근무 여건을 조정할 수 있다.

③ 학습지원담당교원은 학습지원담당교원으로 지정된 날부터 1년 이내에 법 제9조제2항에 따라 교육부장관 또는 교육감이 제공하는 직무연수를 이수해야 한다.

제10조(시·도기초학력지원센터의 지정·운영 등) ① 교육감은 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기관·법인이나 단체를 기초학력지원센터로 지정할 수 있다.

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2.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공익법인
3. 「민법」 제32조에 따른 비영리법인
4.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의 대학 및 같은 조 제3호의 교육대학
5. 그 밖에 교육감이 기초학력 보장 관련 업무를 수행하기 적절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기관 또는 단체

② 제1항에 따라 지정된 기초학력지원센터(이하 “시·도기초학력지원센터”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지역 여건을 고려한 기초학력시행계획의 추진 지원
2. 시·도 교육청의 학습지원교육 운영 지원
3. 학습지원담당교원의 역량 강화를 위한 연수 지원 및 운영
4. 시·도 교육청의 기초학력 보장 관련 사업의 성과 관리
5. 제7조제4항에 따른 추가 지원이 필요한 학생에 대한 지원

③ 시·도기초학력지원센터로 지정받으려는 기관·법인이나 단체는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1. 기초학력 보장 관련 사업의 목표 및 계획이 적절할 것
2. 기초학력 보장 관련 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전문인력을 보유할 것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시·도기초학력지원센터의 지정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감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11조(기초학력지원센터 지정 등의 게시) 교육부장관 및 교육감은 국가기초학력지원센터 또는 시·도기초학력지원센터를 지정하거나 지정을 취소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교육부 또는 해당 교육청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해야 한다.

□ 초·중등교육법

[시행 2021. 9. 24.] [법률 제17958호, 2021. 3. 23., 일부개정]

제2조(학교의 종류) 초·중등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학교를 둔다. <개정 2019. 12. 3.>

1. 초등학교
2. 중학교·고등공민학교
3. 고등학교·고등기술학교
4. 특수학교
5. 각종학교

[전문개정 2012. 3. 21.]

제28조(학습부진아 등에 대한 교육)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학생들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업일수와 교육과정을 신축적으로 운영하는 등 교육상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16. 2. 3.>

1. 성격장애나 지적(知的) 기능의 저하 등으로 인하여 학습에 제약을 받는 학생 중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15조](#)에 따른 학습장애를 지닌 특수교육대상자로 선정되지 아니한 학생
2. 학업 중단 학생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학습부진아 등에 대한 교육의 체계적 실시를 위하여 실태조사를 하여야 한다. <신설 2016. 2. 3.>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학습부진아 등에 대한 정책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16. 2. 3.>

④ 교육부장관 및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학습부진아 등을 위하여 필요한 교재와 프로그램을 개발·보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6. 2. 3.>

⑤ 교원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른 학습부진아 등의 학습능력 향상을 위한 관련 연수를 이수하여야 하고, 교육감은 이를

지도·감독하여야 한다. <신설 2016. 2. 3.>

⑥ 학교의 장은 학업 중단 징후가 발견되거나 학업 중단의 의사를 밝힌 학생에게 학업 중단에 대하여 충분히 생각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학교의 장은 그 기간을 출석으로 인정할 수 있다. <신설 2016. 12. 20., 2021. 3. 23.>

⑦ 제6항에 따른 학생에 대한 판단기준 및 충분히 생각할 기간과 그 기간 동안의 출석일수 인정 범위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감이 정한다. <신설 2016. 12. 20., 2021. 3. 23.>

[전문개정 2012. 3. 21.]

□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시행 2021. 6. 23.] [대통령령 제31790호, 2021. 6. 22., 일부개정]

제54조(학습부진아 등에 대한 교육 및 시책) ① [법 제28조 제1항](#)에 따른 학습부진아 등(이하 “학습부진아등”이라 한다)에 대한 판별은 교육감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학교의 장이 한다. <개정 2016. 8. 2.>

② 학교의 장은 학습부진아등에 대하여 교육감이 정하는 수업일수의 범위에서 체험학습 등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거나 교육감이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교육기관 등에 위탁하여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6. 8. 2.>

③ 교육부장관 및 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지원사업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2. 4. 20., 2013. 3. 23., 2016. 8. 2.>

1. 학습부진아등이 밀집한 학교에 대하여 교육·복지·문화 프로그램 등을 제공하는 사업

2. 학습부진아등에 대하여 진단·상담·치유·학습 지원 프로그램 등을 제공하는 사업

④ 제3항에 따른 지원사업 대상학교의 선정기준, 대상학생의 선정절차 등 지원사업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교육감의 의견을 들어 [교육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신설 2010. 12. 27., 2013. 3. 23.>

⑤ 삭제 <2017. 5. 8.>

⑥ 삭제 <2017. 5. 8.>

⑦ 교육감은 교원이 [법 제28조 제5항](#)에 따라 학습부진아동의 학습능력 향상을 위한 연수를 받을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는 연수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신설 2016. 8. 2.>

1. 연수의 목적 및 내용
2. 연수의 개설 및 운영 기관
3. 연수의 종류
4. 교육과정별 연수 대상 및 인원
5. 연수의 이수기준
6. 그 밖에 연수의 운영 및 연수비의 지급 등에 필요한 사항

⑧ 제7항에 따른 연수의 내용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신설 2016. 8. 2.>

1. 학습부진아동에 대한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
2. 학습부진아동의 판별·진단·지도·예방 및 지원 방법에 관한 사항
3. 학습부진아동에 대한 지도 우수 사례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학습부진아동의 학습능력 향상에 필요한 사항

[제목개정 2013. 10. 30.]

충청북도교육청 기초학력 보장을 위한 교육환경 지원 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재정수반요인

- 해당사항 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 충청북도교육청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4항제2호

3. 미첨부 사유

- 본 조례안은 현재 충청북도교육청에서 추진하고 있는 기초학력 보장 및 향상 지원 사업과 연계가 가능하므로 별도의 비용이 발생하지 않음.
- 각급 학교에서도 기초학력 보장을 위한 다양한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음.